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12.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3
2. 시험연구비 집행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6
3.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정)	7
4.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시정)	10
5. 시험연구 장비 구매 및 성분분석 외부기관 용역 의뢰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호남 지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구 현황은 2개과, 총 29명(정원 11명, 청원경찰 4명, 비정규직 14명)이고, 2016년 예산은 1,438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회계감사와 더불어 시설물 건립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9. 26. ~ 30.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2. 1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 관 주 의

제 목 「국가계약법」 따른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가. 회계연도를 초과한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관련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와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공사’ 등 5건의 공사와 ‘산업용 내시경 구매’ 등 8건 등 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인 ‘14.12.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다음 회계연도인 ‘15.11.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실제 공사는 ‘15년 3월에 착공), 물품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2015년 2월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2월에 납품받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표-1> 회계연도를 초과한 계약현황 (2013 ~ 2015)

구분	건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사 착공일
공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전기공사	143,128	2014.12.16.~2015.11.30	(주)◆◆◆◆	2015.03.01
공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공사(조경)	21,850	2014.12.17.~2015.11.30	(주)●●	2015.03.01
공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통신 공사	50,582	2014.12.17.~2015.11.30	(주)★★★★	2015.03.01
공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공사(소방)	32,218	2014.12.18.~2015.11.30	(주)□□	2015.03.01
공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공사(건축)	1,265,556	2014.12.17.~2015.11.30	(주)▼▼종합건설	2015.03.01
물품	다기능프린터 구입	6,270	2014.12.10.~2015.02.06	(주)▲▲전산	
물품	사진실측프로그램 구매	16,775	2014.12.10.~2015.02.06	(주)■ ■ ■ ■	
물품	시료미세분쇄기 구매	19,800	2014.12.11.~2015.02.06	(주)♠♠♠♠	

구분	건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사 착공일
물품	드라이캐비닛 구매	21,500	2014.12.11.~2015.02.06	(주)○○○	
물품	위성장치 구매	37,400	2014.12.11.~2015.02.06	(주)□□□□□□설탄트	
물품	열화상카메라 구매	28,600	2014.12.12.~2015.02.09	(주)□□□□	
물품	열풍건조기 구입	9,900	2014.12.16.~2015.02.13	(주)◆◆◆◆리서치	
물품	산업용 내시경 구매	48,900	2014.12.16.~2015.02.13	(주)▶▶▶코리아	
	13건	1,702,479			

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건의 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안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특별전 패널 및 전시보조물 등 설치 및 제작’ 사업을 발주하며 예정가격을 27,000,000원(추정가격 24,5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공고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후’와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총 3건의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건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계약현황 (2014 ~ 2016)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예정가격(원)	추정가격(원)	계약금액(원)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특별전 패널 및 전시 보조물 등 설치 및 제작	‘15.08.24.~’15.09.21.	●●●●	27,000,000	24,580,000	24,000,000

위성장치 구매	'14.12.11.~'15.02.06.	(주)■■■■ 콘설탄트	39,600,000	36,000,000	37,400,000
산업용 내시경 구매	'14.12.16.~'15.02.13	(주)▶▶▶ 코리아	49,999,000	45,453,630	48,900,000

다. 선금의 정산 관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설계용역'을 ○○○ ▲▲건축연구소 등과 계약('13.5.21.~'13.9.17./계약금액 69,000천원)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인 ○○○ ▲▲건축연구소 등의 선금 지급 요청('13.5.30.)에 따라 계약금의 70/100에 해당하는 48,300천원을 선금으로 지급('13.6.11.)하였으면 계약의 완료 등에 따라 선금 전액이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선금의 사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급된 선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회계연도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선금사용 내역서 제출 등 계약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 관 주 의

제 목 시험연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내 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내 구성 세목 간 변경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시험연구비 집행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3호, 2014.3.24.)」 세부사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수행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 비목으로의 집행을 금하고 있으며, 다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집행함이 타당하나,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운 1월과 6월에 발굴조사 유적 복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당초 예산 75,000,000원 중 총 55,000,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으로 비목 간 변경을 실시하였고, 당초 목적인 연구용역 수행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시험연구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연구개발비는 당초 목적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유재산관리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전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등기·등록 등) 제①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하되 책임운영기관 법령에 따른 사전 협의, 명세서 송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국유재산(관사) 관리 관련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유재산관리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관사에 대한 ‘전세권’을 국유재산으로 등재·관리하여야 하나, 2016. 9월 자체종합감사일까지 국유재산(관사 총 7동) 4동은 미등재되어 있고 3동은 변동가액이 상이하게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관사) 등재 및 관리 현황】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61 ♠♠아파트】

(단위:천원)

연번	구분	계약 시기	현 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거주자	국유재산		비고
						등재 여부	등재 가액	
소계	7동			242,440			73,000	
1	102동 409호	2006년	2016.01.23. ~2017.01.22.	34,400	소 장	등재	24,000	사용 중
2	102동 307호	2012년	2016.01.02. ~2017.01.01.	35,830	-	미등재	-	계약해지 예정
3	107동 1102호	2007년	2015.07.02. ~2016.07.01.	34,810	과 장	등재	25,000	사용 중
4	107동 502호	2011년	2015.10.01. ~2016.09.30.	35,830	연구사 2명	미등재	-	계약해지 예정
5	107동 1007호	2005년	2015.09.30. ~2016.09.29.	30,110	연구사	등재	24,000	(보증금 보유)
6	105동 1107호	2010년	2015.10.09. ~2016.10.08.	35,730	실 장	미등재	-	사용 중
7	105동 1401호	2010년	2015.12.18. ~2016.12.17.	35,730	연구사	미등재	-	계약해지 예정

나. 예산 세목조정 관련

관사임차료는 임차료(210-07)가 아닌 무형자산(440)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2013~2016년까지 매년 금액 인상(약 5%)이 발생하는 국유재산(관사)에 대해 세목을 임차료(210-07)로 조정하여 전세 인상금(총 51,040천원)으로 집행하였다.

【세출예산 임차료 세목 조정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사용대상	임차료 변경 금액	변경 전 예산과목	비고
소계		51,040		
2013년	전남 나주시 삼영1길 61 ♠♠아파트	17,870	201-02, 210-15	
2014년		18,530	210-02, 210-08	
2015년		12,990	210-08, 210-09	
2016년		1,650	210-08	

조치할 사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미 등재 및 변동가액이 상이한 관사 7동에 대해 실태 조사하여 등재·정비하시고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9조(악성코드, 바이러스 방지대책) 제①항 제7호에 따라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메신저, 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 연동 구간의 침입 차단시스템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상기 규정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외부 기관과 대용량의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사무실 인터넷 망 PC에 파일공유 프로그램 (웹하드, LG 유플러스)을 자체종합감사(2016. 9월)시점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이 비용으로 총 1,716,000원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웹하드의 사용을 중지하시고 이후 관련 업무 처리 시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시험연구 장비 구매 및 성분분석 외부기관 용역 의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실)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 정보 관리 규정 (2013.11.04./훈령 제41호)」 제3조(장비 구축 계획·심의)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장비를 구축하고, 동 규정 제②항에서는 도입부서의 장은 장비의 구축 계획 및 심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중복성, 활용성, 전담인력 확보, 과제 종료 후 활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가. 시험연구 장비 구매 및 운영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구입 한 장비의 운영 실적이 아래와 같이 매우 낮고 일부 구입 장비는 연구소(본소)에서도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 편성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는 상기와 같은 검토 과정이 없다.

【 주요 시험연구 장비 운영 실적 현황 】

(단위:원)

번호	장비명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운영시간 또는 횟수 (연간 합계)	활용도가 저조한 사유 (기관측 의견)	타 기관 보유 (구입년도)
1 R&D 예산	연X선 발생장치	2013-11-07	105,208,740	· '13년 : 184점(10일) · '14년 : 328점(15일) · '15년 : 99점(7일) · '16년 : 85점(5일)	자체 유물을 대상으로 연간 100여점 이상 촬영으로 활용도가 높음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2011.07.18.)
2 R&D 예산	진공원심 분리기	2014-09-19	67,419,990	· '14년 : 0점 · '15년 : 100점(20일) · '16년 : 0점	철기 출토 유물이 많아 '15년에는 활용이 많았으나 '15년 이후 에는 출토 유물이 없어 활용도가 낮음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1998.12.09.)

번호	장비명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운영시간 또는 횟수 (연간 합계)	활용도가 저조한 사유 (기관측 의견)	타 기관 보유 (구입년도)
3 R&D 예산	분광 측정계	2014-03-25	14,190,000	· '15년 : 5점 (5일) · '16년 : 10점(10일)	유물 표면 색도 측정 대상이 적고 외부 기관 의뢰 건수가 없음.	보존과학실 (2006.07.04.)
4 자체 예산	산업용 내시경	2015-01-26	48,900,000	· '15년 : 6건 (6일) · '16년 : 3건 (3일)	운영 시험 단계로 활용도가 낮음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2011.06.29.)
5 자체 예산	열화상 카메라	2015-01-26	28,600,000	· '15년 : 3건 (7일) · '16년 : 6건(10일)	운영 시험 단계로 활용도가 낮음	보존과학실 (2009.09.14.)

나. 기관 보유 장비 성분 분석 외부기관 용역 의뢰 관련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13~2016년까지 복원 용관 및 철슬래그 분석을 외부기관 (공주대학교 등 4개 기관/33,095천 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분석에 대한 장비를 연구소 (본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용역의 연계성 등의 사유로 용역을 의뢰하였다.

【기관 보유 장비 성분 분석 외부기관 용역 의뢰 현황】

(단위:천원)

계약 일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 방법	용역 기관	외부 분석방법 의뢰 대비 자체장비 보유 여부													비고
					의뢰 분석	색도측정	전암 대자율	비중 (전자저울)	실체 현미경	편광 현미경	SEM-EDS	XRD	DTA	TG	ICP-AES			
소계	5건	33,095																
2013. 7.31.	복원 용관 및 전통 살가마 성분분석	7,680	수의 계약	●●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뢰 분석	색도측정	전암 대자율	비중 (전자저울)	실체 현미경	편광 현미경	SEM-EDS	XRD	DTA	TG				
					연구소 보유여부	(○) 2014.3월	(○) 2015.4월	(○) 2000.12월	(○) 2012.4월	(○) 2000.6월	(○) 2015.11월	(○) 2011.9월	(○) 2013.8월	(○) 2013.8월				
2014. 4.10.	복원 용관 전통 진흙가마 성분분석	7,500	수의 계약	●●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뢰 분석	색도측정	전암 대자율	비중 (전자저울)	실체 현미경	편광 현미경	SEM-EDS	XRD	DTA	TG				
					연구소 보유여부	(○) 2014.3월	(○) 2015.4월	(○) 2000.12월	(○) 2012.4월	(○) 2000.6월	(○) 2015.11월	(○) 2011.9월	(○) 2013.8월	(○) 2013.8월				
2016. 8.30.	복원 용관 및 전통 살가마 성분분석	9,200	수의 계약	●●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뢰 분석	색도측정	전암 대자율	비중 (전자저울)	실체 현미경	편광 현미경	SEM-EDS	XRF	XRD	DTA	TG	ICP-AES		
					연구소 보유여부	(○) 2014.3월	(○) 2015.4월	(○) 2000.12월	(○) 2012.4월	(○) 2000.6월	(○) 2015.11월	(○) 2012.11월	(○) 2011.9월	(○) 2013.8월	(○) 2013.8월	(X)		
2013. 10.25.	호남지역 철 슬래그 XRD 성분 분석	3,486	일반 지출	●●대학교 ●●대학교	의뢰 분석	WDXRF	ICPMS				SEM-EDS	XRD						
					연구소 보유여부	(○),부품(X) 2002.9월	(○) 2008.12월				(○) 2015.11월	(○) 2011.9월						
2014. 12.23.	호남지역 제철기술 분석관련 분석	5,229	일반 지출	한국자원연구원 ●●대학교 ◆◆대학교	의뢰 분석	WDXRF (2회)	ICPMS					XRD						
					연구소 보유여부	(○),부품(X) 2002.9월	(○) 2008.12월					(○) 2011.9월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방연구소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장비를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각종 성분 분석 시 연구소(본소 포함)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시험 분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